

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

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(보고 등)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에 따라 과태료 자진납부 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'폐문부재'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(송달) 및 제15조(송달의 효력 발생)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9. 8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



1. 건 명: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(사업보고서 미제출)에 따른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
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, 동법 시행령 제7조의2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: 2026. 9. 8. ~ 2026. 9. 22. (15일간)
 - ※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 - ※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41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(효력 발생일)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(fax. 062-712-4510).
5. 납부안내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(나라키움 광주통합청사(5층))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김소현 주무관(Tel 062-609-881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공 시 송 달 자 명 단

관서: 광주지방고용청

(단위 : 원)

세 목 코 드	세 목 명	발 행 번 호	법인명	법인번호	대표자명	사업자등록번호	서 류 명 칭	송달불능사유
주 소						과태료(기금)	가 산 금	중 가 산 금
12-56-563	과태료		주식회사 잇다	200111-0358***	이O학	410-86-69***	납입고지서	폐문부재
전남광주특별시 동구 산수길 00번길 0						1,360,000원	0	0